의 안 번 호 984

【울산광역시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안 일 자 : 2013. 05. 07.(화)

나. 제 안 자 : 신성봉의원 외 5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05. 09.(목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05. 15.(수)

2. 제안이유

○ 중구 자율방범대원들의 지원경비가 야식비, 피복비 등 방범 활동의 소요경비만 지원하고 있으나, 야간순찰 및 청소년 선 도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의 단합과 복지향상 경비도 일부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 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 경비 지원 규정 신설 (안 제6조제1항)
- 4. 관련법령: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○ 경찰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우범지역을 순찰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에게 야식비,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원들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대회를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